

<p>제2020-130호 2020년 7월 10일(금)</p>	<p>시  보 여수시</p>	<p><b>시 정 지 표</b>                  시민공감 감동시정                  균형있는 상생경제                  사람중심 나눔복지                  품격있는 문화관광                  살기좋은 정주환경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**고 시**

- 여수시 고시 제2020-28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사항 고시 3

**공 고**

- 여수시 공고 제2020-1714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4
- 여수시 공고 제2020-1725호 여수국가산단(삼동지구) 분양공고 5

**기 타**

- 여수시 규칙 제740호 여수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 20
- 여수시 규칙 제741호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3
- 여수시 규칙 제742호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36
- 여수시 규칙 제743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38
- 여수시 훈령 제376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40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

여수시 고시 제2020- 280호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 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 고시 합니다.

허가번호 (변경일자)	점용·사용 장소	점용·사용 면적(㎡)	점용·사용 목 적	허가받은 자		변경사항(허가기간)	
				주 소	성 명	변경전	변경후
2010-036 (2020.7.10)	여수시 소호동 502-2번지 지선 공유수면	450.5㎡ (직접82.8 간접367.7)	범선 및 크루즈선 접안시설	여수시 장군산길 10, 113동 202호(여서동,경남아파트)	오정순	2015.8.6. ~ 2020.8.5.	2020.8.6. ~ 2025.8.5.

2020. 7. 10.

여 수 시 장

#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

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(태양광발전)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,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7. 10.

## 여 수 시 장

1. 공 고 명 : 전기사업(태양광발전) 양수인가 공고
2. 공고기간 : 2020. 7. 10. ~ 2020. 7. 25.
3. 공고내용 : 전기사업(태양광발전) 양수인가 내역

구 분	허가 번호	용량 (kW)	발전소명(대표자)	주 소	소 재 지
양도인	여수 제326호	499.5	복*리1 태양광(아*현)	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산로 33-4(계산동)	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591-20
양수인			유*에너지1호 태양광(유은에너지 아*만)	경북 안동시 함전길 50(송현동)	
양도인	여수 제327호	499.5	복*리2 태양광(박*자)	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산로 33-4(계산동)	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591-19
양수인			유*에너지2호 태양광(유은에너지 아*만)	경북 안동시 함전길 50(송현동)	
양도인	여수 제335호	299.7	썸*에너지2 태양광(사*회)	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로 29,702호(소슬채이파크)	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591-18
양수인			썸*피어태양광발전소(조*숙)	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*8길, 나동 202호(매화하이즈빌라)	
양도인	여수 제336호	99.9	복*리3 태양광(아*윤)	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 33, 105동 804호(학의뜰아파트)	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591-10
양수인			장*빌 태양광발전소(산*연)	전남 순천시 대석4길 10-1, 2층(연향동)	
양도인	여수 제330호	99.9	싸*케이앤지 태양광(싸*케이앤지 아*현)	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산로 33-4(계산동)	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591-11
양수인			하*에너지 태양광발전소(조*숙)	강*도 화성시 동탄대로 181, 101동 205호(동탄린스튜디오스튜디오)	
양도인	여수 제329호	99.9	싸*케이에너지 태양광(싸*케이에너지 아*현)	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로 11번길 6-15(복용동)	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591-13
양수인			S*태양광발전소(감*회)	전남 여수시 박람회길 61, 119동 1104호(엑스포힐스테이트단지)	
양도인	여수 제431호	97.2	호*8호 태양광발전소(감*오)	순천시 풍덕주택1길 45	여수시 호명동 산289-1번지
양수인			(유)하*에너지 태양광(감*형)	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2길 31-10	
양도인	여수 제432호	97.2	호*9호 태양광발전소(장*기)	순천시 수박등2길 21, 105동 705호(현대아파트)	여수시 호명동 산289-1번지
양수인			(유)박*라에너지 태양광(감*영)	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1길 8-11	

# 여수국가산단(삼동지구) 분양 공고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3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(삼동지구)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.

2020. 7. 10.

## 여 수 시 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

### 1. 분양대상용지

구 분	필지	면적(m <sup>2</sup> )	금액(천원)	매각방법
계	11	25,004.1	14,300,088	
지원시설용지	1	3,533.9	1,794,311	분양예정
복합시설용지	4	11,556.3	6,575,636	수의계약
공공지원용지	4	8,469.5	5,012,581	수의계약
후생지원용지	2	1,444.4	917,560	분양예정

### 2. 분양대상 자격요건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,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.

### 3. 입주대상 업종

#### 가. 공공지원시설용지

- 공공행정시설(동사무소, 파출소, 노동사무소 등)
- 문화 및 집회시설(문화관, 체험관, 기념관, 산업전시장 등)
- 교육연구시설, 우정·통신용 시설

#### 나. 생산지원시설용지

- 판매시설(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

- 운수시설(화물운송, 택배)
- 교육연구시설(연구소)
- 창고시설(창고, 하역장, 집배송 시설)
- 업무시설(각종협회, 업무지원센터, 사무소 등)
- 근린생활시설의 판매시설(건축자재, 산업용 부품 등)

다. 후생지원시설용지

- 근린생활시설의 의료시설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 등)
- 근린생활시설의 판매시설(편의점, 생필품, 잡화 등 소매점)

---

- 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 등
- 근린생활시설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(탁구장, 볼링장, 당구장, 골프연습장 등)
- 금융시설(은행, 증권거래소, 보험)

#### 4. 입주제한업종

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되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에 사전 문의  
 {주소 : 여수시 여수산단로 (주삼동 1029-3), 전화 : 070-8895-7994~3}

#### 5. 계약일정

가. 공고기간 : 2020. 7.10. ~ 7.20.(10일간)

나. 신청접수 : 2020. 7. 21.부터 - 여수시, 한국산업단지공단

다. 입주심사 : 2020. 7. 23.부터 -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

라. 입주심사결과통보 : 2020. 7. 27.부터 (산단공 → 신청업체, 여수시)

마. 분양계약체결 : 2020. 7. 28.부터 (여수시 ↔ 업체)

바. 입주계약체결 : 2020. 7. 30.부터 (산단공 ↔ 선정업체)

※ 분양계약금(10%)를 납부한 후 여수시(공영개발과)에서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함.

## 6. 계약 방법

- 가.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에서 심사를 거친 실수요자에 한하여 여수시와 매매계약 체결
- 나.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에게 신청 접수 우선 순위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

## 7. 구비서류

가. 입주심사 신청서류 접수 시(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)

- ①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 1부.
- ②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)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
나. 분양계약 체결 및 입주계약 체결 시

### 【분양계약 - 여수시】

- ①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)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- ② 인감증명서(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 1부.
- ③ 인감도장(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,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)
- ④ 계약금 납입 영수증

### 【입주계약 -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】

- ① 분양계약금(분양대금의 10%) 납부영수증 지참
- ② 인감도장(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,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)

## 8. 분양대금의 납부 방법

가. 계약금 : 계약체결일에 10%납부(입찰보증금을 계약금일부 대체)

나. 중도 1차 :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양대금의 30%납부

다. 중도 2차 :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대금의 30%납부

라. 잔금 :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 분양대금의 30%납부

마. 분양대금(중도금, 잔금)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되면 연체일수에 따라 우리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(연체이자)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※ 분양대금 납부 : 전국 금융기관 창구 또는 전자납부

## 9.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 이전

- 가. 토지사용 승낙 : 분양대금의 70%이상을 납부하고 잔금에 대하여 지급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서류용 토지사용 승낙 가능.
- 나. 소유권 이전 : 분양대금 완납 시 소유권 이전을 원칙

## 10. 계약해제

- 가.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를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
- 나. 기타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- 다. 분양계약서 제13조를 위반 하였을 경우, 제14조에 의거 분양계약금을 시에 귀속 합니다.

## 11. 미분양토지 처리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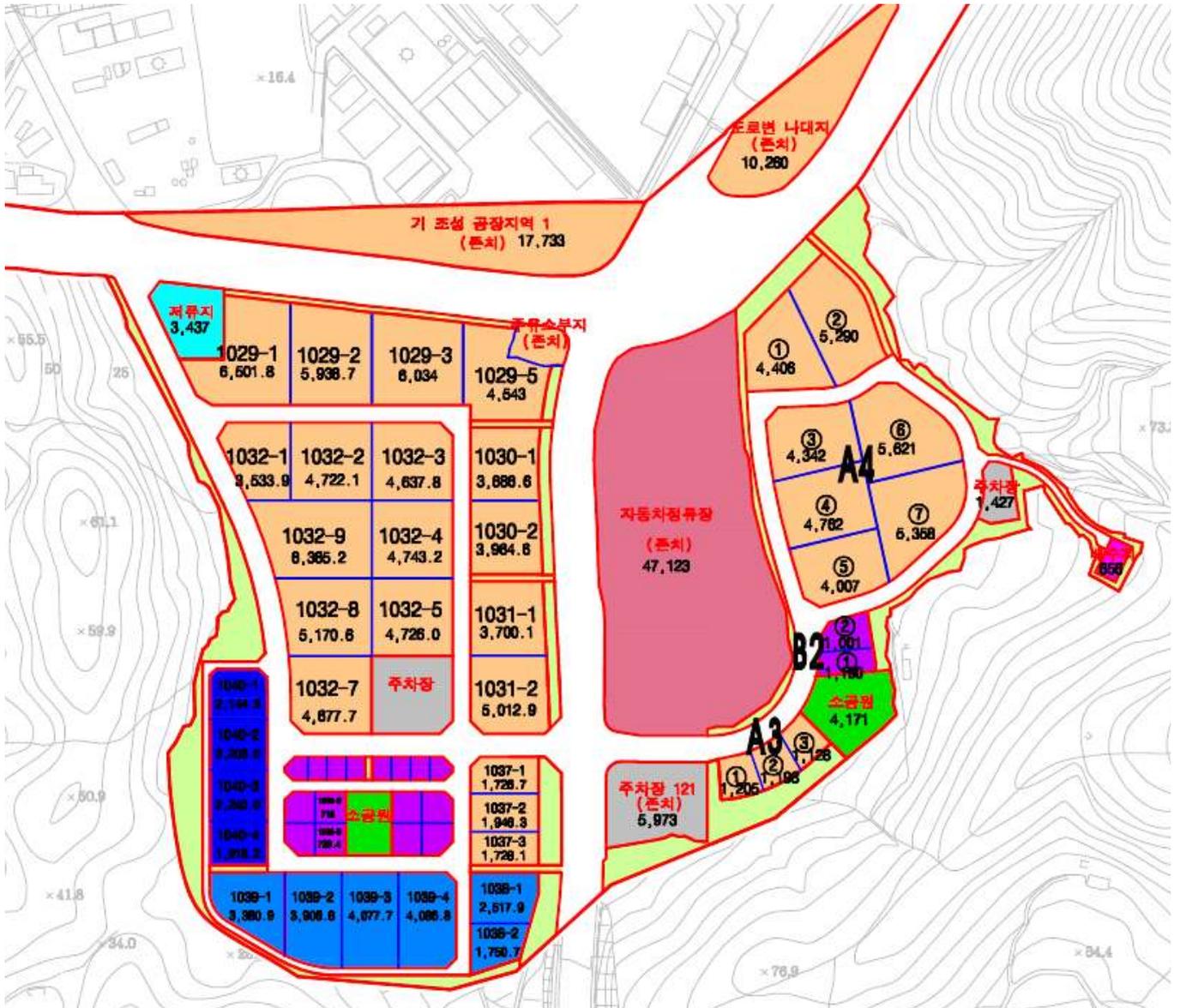
- 공장용지 및 지원시설용지: 수의계약(선착순) 2019년 이후 수의계약 추진중
- ※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항(재산매각 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동안만 적용)

## 12. 유의사항

- 가. 본 산업단지의 개발 및 실시계획, 환경·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, 토지 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 등을 열람하거나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나. 우수·오수·상수 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·연결 하여야 하고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, 토지사용 중 도로, 상하수도, 경계석,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·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.
- 다. 토지사용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·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라.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마. 분양토지의 최종 잔금 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각종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
- 바. 분양토지에 당초 지하시설 및 바닥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매수인의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합니다.
- 사. 분양토지의 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명의인 변경, 권리의무승계 등 계약자 변경사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아. 향후 본 공고문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별도 공고 없이 본 게시내용에 변경, 추가사항을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자. 소유권이전 비용은 분양계약자가 부담 합니다.
- 차.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삼동지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생골재를 일부 성토용 재료로 사용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타.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공영개발과(☎061-659-4592, 4586)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 광양지사(☎070-8895-7994~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1. 여수국가산업단지(삼동지구) 분양도면



<b>표 례</b>		구 역 계		저 류 지
		환경지원시설용지		도 로
		생산지원시설용지		주 차 장
		후생지원시설용지		보 영 자 전 용 도 로
		폐 합 시 설 용 지		자 동 차 정 류 장
		민 원		
		표 지		
		배 수 지		



## 2. 분양토지 필지조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면적 (㎡)	단가(㎡)	금 액(원)	비고
1	주삼동	1038-1	2,517.9	563,000	1,419,656,480	복합용지
2	주삼동	1038-2	1,750.7	557,000	976,573,970	
3	주삼동	1039-2	3,906.8	581,000	2,273,172,360	
4	주삼동	1039-1	3,380.9	563,000	1,906,233,660	
5	주삼동	1040-1	2,144.3	598,000	1,284,173,170	공공지원
6	주삼동	1040-2	2,203.0	595,000	1,312,707,910	
7	주삼동	1040-3	2,204.0	584,000	1,289,024,040	
8	주삼동	1040-4	1,918.2	586,500	1,126,676,610	
9	주삼동	1032-1	3,533.9	514,000	1,794,311,240	생산지원
10	주삼동	1035-2	715.0	628,000	449,686,050	후생지원
11	주삼동	1035-3	729.4	640,500	467,874,030	

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(삼동지구)  
분양 토지 계약서

여 수 시

#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(삼동지구) 분양계약서

## ■ 입주기업체

업 체 명		대 표 자	
업 종			
용 지	m <sup>2</sup>	건 축 면 적	m <sup>2</sup>
연 면 적	m <sup>2</sup>	부대시설면적	m <sup>2</sup>
준공 예정일			

## ■ 분양받은 토지의 표시

소재지	번지	지정용도	지목	면적	비고
여수시 주삼동				m <sup>2</sup>	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 여수국가산업단지(삼동지구)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여수시장(이하 “갑” 이라 칭한다)과 입주업체인 (이하 “을” 이라 칭한다)간에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계약의 성립과 효력)**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주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**제2조(매매대금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)** ① 갑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매각하며,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매매대금 : 금 원(금 원 )				
대 금 납 부 방 법				
구 분	납부약정일	납 입 액	납부금액	미납액
계약보증금	계약일			
1회 할부금	계약일 3월이내			
2회 할부금	계약일 6월이내			
잔 금	계약일 9월이내			
합 계				
납 부 장 소	광주은행(여수시청 시금고), 납부방법 : 고지서 발급			

② **갑**이 **을**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납부약정일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, 원금의 순에 의한다.

**제3조(지연손해금)**① **을**이 제2조의 매매대금(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말하며 정산금을 포함한다)을 납부약정 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지정금융기관(광주은행)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최고율에 해당하는 년(15%)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**갑**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**갑**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이율을 증·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**을**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.

**제4조(공공시설이용 및 부담금)** **을**은 계약체결 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 내 공동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이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부담금 및 관리비등 비용부담의 의무를 진다.

**제5조(조세공과금의 부담)**① 제2조에서 정한 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**갑**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**을**이 부담하기로 한다.

② **을**이 매매대금완납 전에 **갑**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할 때에는 그 사용 승낙일을 제1항의 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로 본다.

**제6조(의사표시 및 통지의무)**① 계약의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**갑**은 이 계약체결 이후 할부이자율·연체이자율의 변경 및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**을**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**을**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·명칭 또는 주소·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**갑**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**갑**의 **을**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**갑**이 책임지지 아니한다. 또한 계약서상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.

**제7조(목적용지의 사용)**① **을**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**을**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**갑**은 변경부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**을**은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**을**은 조성공사 완료 전에 건축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목적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**갑**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**을**이 미납잔금에 대하여 **갑**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또는 분양대금 70%이상을 납부하였을 시 **갑**은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용지를 사용 승인 할 수 있다.

**제8조(면적기준 및 정산)**① 당해 목적용지의 면적은 준공 후 지적공부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, 목적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사업 후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.

② **갑**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확정측량성과 및 정산내역, 정산금 납부방법을 **을**에게 통보하기로 한다.

**제9조(소유권 이전)**① **갑**은 **을**이 분양대금(정산금을 포함한다)을 완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. 다만, 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.

② **갑**은 **을**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**을**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**을**의 부담으로 한다.

③ **을**의 원인으로 분양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**을**이 부담하며, 반환할 분양대금 중에서 공제한다.

**제10조(담보권의 행사)**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목적용지에 대한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로서 **을**이 미납 잔대금을 약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**갑**은 제7조 제3항의 담보물에 대하여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**을**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.

**제11조(기한이익의 상실)** **갑**은 **을**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**을**에게 제2조의 분할수납기간에 불구하고 미지급 잔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**을**이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**갑**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

2. **을**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(자기 신청을 포함한다)이 있었을 때

**제12조(조성사업의 시행 등)**① **을**이 조성사업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**을**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한다. 이 경우 **을**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**갑**은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**갑**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**갑**은 기 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3조의 지연손해금 **을**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**을**에게 지급하거나 **을**이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. 다만, **갑**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, 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
3. 태풍·해일·홍수·지진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
4. 문화재 발굴,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5. 기타 제1호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**갑**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사용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

**제13조(분양계약의 해지)**① **을**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**갑**은 **을**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**을**이 허위의 진술, 부실한 증빙자료의 제시,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
2. **을**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
3. **을**이 목적용지 및 공장 등을 **갑**의 동의 없이 불법양도하거나 임대한 때
4. **을**이 제11조 각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**갑**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
5. 착공이 가능한 날(공장착공 가능통보일)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
6. **을**이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
  7.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항에 해당되는 때
  8. 기타 **을**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
- ② **을**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1. **을**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
  2. **갑**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 이전이 6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, 다만, 제12조 제2항 단서 각호의 1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.
- ③ 이 계약체결이후 **갑** 또는 **을**의 귀책사유 없이 제12조 제2항 단서 각호의 1의 사유 등으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**갑**과 **을**은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④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**을**은 즉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잔무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고,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대로 회복하여야 하며,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계약보증금·위약금 귀속)** 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**갑**은 **을**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**을**에게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**갑**에게 귀속한다. 이 경우 제4항의 소유권 회복비용 등 **을**이 부담할 비용은 **갑**이 **을**에게 반환하는 매매 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.

②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**갑**은 **을**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. 이때, **갑**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**을**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나머지금액 및 제2항 매매대금을 **을**에게 지급 시는 실제 납부 일부터 환금일까지 지정금융기관(광주은행) 요구불 금리로 지급하되 관련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.

④ **을**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분양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기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1항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.

**제15조(공장의 건축)** ① **을**이 건설할 공장 및 기타시설의 착수시한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.

② **을**이 공장 등 기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추가약정)** 갑은 본 계약서 이외에 **을**이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속으로 별도 추가약정을 받을 수 있다.

위 각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**을**이 각각 1통씩 보관 한다.

2020 년       월       일

“갑” 賣 渡 人 : 여 수 시 장 (인)

주소 : 여수시 시청로 1 (학동)

“을” 買 受 人 업 체 명 :

대 표 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주민(법인)등록번호 :

주 소 :

연 락 처 :



제6회 여수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 
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7 월 10 일

여 수 시 장 권 영 인 

여수시 규칙 제740호

붙임 여수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1부.

## 여수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

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본문 중 “공무원은”을 “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”으로, “미리”를 “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항 본문 또는 제3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외부강의 등”을 “공무원의 외부강의등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.



제6회 여수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 
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 
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7 월 10 일

여 수 시 장 권 오 봉 인 

여수시 규칙 제741호

붙임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.

##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”을 “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”로, “제5조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7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제6조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10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9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1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여수시 ○○○○○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

의안	
번호	

제출연월일 : . . . .

제 출 자 : 여수시장

### 1. 요구이유

- -----
- -----

### 2. 주요골자 (※협약사항의 내용을 요약하여 열거한다)

가. -----  
-----

나. -----  
-----

다. -----  
-----

라. -----  
-----



[별지 제3호 서식]

## 여수시 ○○○○ 사무의 위·수탁 협약서

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여수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·수탁함에 있어 여수시장을“갑”이라 하고, ○○○○를 “을”이라 하여 “갑”과 “을”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위·수탁사무) 이 협약에 의한 위·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: 별지와 같다)

### 1. 위·수탁사무

사 무 명	사무의 내용

### 2. 위·수탁시설

시 설 명	내용 및 수량

### 3. 위·수탁장비

장 비 명	내용 및 수량

제2조(위·수탁기간) ①이 협약에 따른 위·수탁기간은 ○○○○년 ○  
○월 ○○일부터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로 한다.

②갑 또는 을이 위·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 
체결하여야 한다.

제3조(협약의 해지) ①이 협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 
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.

②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갑은 이 협약  
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,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이의  
를 제기할 수 없다.

1.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
2.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
3.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 
때

제4조(협약의 변경)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 
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.

제5조(해석)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  
르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.

제6조(수탁사무의 처리) 이 협약에 따라 을에게 위탁된 사무는 을의  
명의로 시행한다.

제7조(시설 및 장비의 관리) 을은 이 협약에 따라 갑이 관리를 위탁한  
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설 및 장비의 반환) 이 협약 제2조에 따른 위·수탁기간이 만  
료되거나 제3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 
날부터 30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입금의 처리) <위·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 작성>

제10조(예산의 지원) <위·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의 지원이 수반될 경우 작성>

제11조(정산 및 보고) <수입금 및 예산의 지원이 있을 경우 작성>

제12조(보험 및 손해배상) ①을은 갑이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.

②을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,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)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3조(협약서의 보관)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,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.

[협약체결일]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갑 : 여 수 시 장 ○ ○ ○ (직인)

을 : ○○○○○○ 대표 ○ ○ ○ (인)

※ 위·수탁 사무의 내용에 따라 표준서식에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여 작성한다.

##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

관리번호 :						
① 관리부서			② 위탁사무명			
③ 위탁기간			④ 수탁단체명 (대표자)			
⑤ 고용인원	명		⑥ 재계약횟수	회		
⑦ 수탁자 선정방법			⑧ 최초위탁일			
⑨ 지원예산액(백만원)						
계	년도		년도		년도	
⑩ 관련 공무원 조서						
소속	직위	직급	성명	재직기간	현 근무처	비고

구분		내용		위탁내용			
일 반 현 황	위탁사무명			시설규모	총 $m^2$ (지하 층, 지상 층)		
	위 치						
	준 공 일			총공사비	백만원		
	시 설 및 장 비						
	시설(사무) 처리근거						
	관리부서	(전화번호 )		과	담당자	(전화번호 )	
수 탁 관 리	수탁기관						
	위탁구분	최초 위탁일					
		재위탁(재계약)기간 : . . . ~ . . . (공증일 : . . . ) (공증일 : . . . ) (공증일 : . . . ) (공증일 : . . . )					
	연 간 수 탁 액	년 백만원		자부담			
근무인력 (명)	구분	계	대표자	직원	비 고 (자격증내역)		
주요사업 추진사항	○ ○ ○						
첨부서류	○ 협약서 사본 1부.						





라 한다)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④ 위원은 총무과장, 소관사무의 담당관, 담당과장, 및 사업소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여수시의회 시의원 2명과 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소관사무의 담당이 된다.

제7조(위탁기간)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간은 위탁사무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. 다만, 환경기초시설 등 대규모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전문가의 용역진단의 결과에 의해

제7조(위탁기간) ① -- 제6조에 따른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정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8조(협약의 체결 등) ①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과 위·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, 위·수탁협약의 체결,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~ ⑤ (생략)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협약의 체결 등) ① -- 제1 2조에 따라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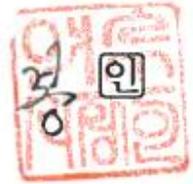
-----

--.  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6회 여수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 
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7 월 10 일

여 수 시 장 권 오



여수시 규칙 제742호

붙임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.

여수시 규칙 제742호

##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

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6회 여수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 
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7 월 10 일

여 수 시 장 권 오 봉 인 

여수시 규칙 제743호

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.

여수시 규칙 제743호

##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

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여수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 
발령한다.

2020년 7월 10일

여수시장 권오봉



여수시 훈령 제 376호

붙임 : 여수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 규정 1부.

여수시 훈령 제376호

## 여수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

여수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2-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